

의안번호	제489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
관한 조례안

발의자	박지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1월 8일

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(박지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월 8일
발의자 : 박지현, 이동우, 김종필,
김호경, 박진희, 변종오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충청북도의 영농활동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영농폐기물의 수거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3. 조례안 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붙임
- 나. 비용 추계 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관련 협의 :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
- 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의 농업환경 보전과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농폐기물”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페비닐·농약빈병·폐부직포·폐반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.
2. “영농폐기물 수거자”란 충청북도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, 단체 및 운반업자를 말한다.
3. “운반업자”란 영농폐기물을 배출지에서 직접 수거하여 운반하는 사람(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)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,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충청북도민과 영농폐기물 수거자 및 운반업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영농폐기물 수거 방안
2.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
3.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
4.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

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충청북도 순환경제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영농폐기물의 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영농폐기물 발생량
2.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
3.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
4.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·군수 및 관계 기관 등

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
2.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
3.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
4.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【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】

제9조(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, 비료, 가축분뇨,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,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,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, 폐농어업자재의 투기(投棄)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0조(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, 농어업 용수,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,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,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,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4조의2와 제16조 및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.

【폐기물관리법】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,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<개정 2007. 8. 3., 2010. 7. 23., 2013. 7. 16.>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고,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8. 3.>

③ ~ ④(생략)

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도내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영농폐기물의 수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영농활동 중 발생된 영농폐기물의 수거비 지원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3조(도지사의 책무)
 - 도지사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
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물가상승,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
- 조례안 제3조(도지사의 책무)에 의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대한 비용 추계

나. 추계 결과: 16,614,450천원

- 연 사업당 최대 3,322,890천원 소요예상
 - 농약용기류 수거보상(대응): 596,790천원
 -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: 2,256,100천원
 -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: 340,000천원
 -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: 60,000천원
 - 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 지원사업: 70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비, 도비, 시·군비, 기타 등

- 농약용기류 수거보상(대응): 국 30%, 도 30%, 한국작물보호협회 40%
-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: 국비 인센티브(20원/kg), 도 20%, 시·군 80%
-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: 국 30%, 시·군 70%
-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: 도 30%, 시·군 70%
- 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 지원사업: 도 30%, 시·군 7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